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해운대구	심의일자	2023-04-07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x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해운대구청	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
대지현황	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반여제3동		
	지번 1602 - 8	관련지번 0	
	대지면적 2053 m ²	용도지역(지구,지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75.43 m ²	건폐율 13.4159 %	층수 지하: 0 층/지상: 3 층
	주용도 창고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 12.8 m	용적률 38.3 %	연면적 합계 785.67 m ²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종합)분야	<p>■ 심의조건</p> <p>【구조】 손철완 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해체잔재물의 높이를 0.4m이하로 적재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.</p> <p>【안전】 이상호 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남측면 보행로에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 조치 검토바랍니다.</p> <p>2. 해체잔재물 운반차량 진출입로 인도에 신호수 배치, 안전표지판 등 안전조치계획을 고려바랍니다.</p> <p>【환경】 김정권 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공사 시 장비투입 내역이 굴착기 이외는 확인이 안되며 소음 대책이 없고 주변 건물의 이격거리 5-6m로 정도로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일반사항</p> <p>1. 본 심의는 해체계획에 대한 검토 심의이며 관련 법령 적합여부는 해체허가 신청 시 별도 검토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신청되어야 합니다.</p> <p>2. 해체허가 신청도서는 해체 심의도서와 일치하고, 상기 조건사항을 반영하며,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</p> <p>3. 해체심의 시 부여받은 위원별 심의 의견(조건)은 해체허가 접수 전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, 해체허가 시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4. 주요 해체공법, 계획 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</p>

<p>심의결과</p>	<p>[] 원안 의결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</p>
	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